

위원회개폐및운영규정

시행일 : 2021. 05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발전계획의 수립, 전문지식과 의견의 수렴, 정책자문 및 기구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육관계법령이나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, 본교 헌장 또는 학칙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회 설치에 적용한다.

제3조(설치절차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목적,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임전결규정 별표1.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성)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부위원장은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②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7조(운영규정)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

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) 각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폐지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폐지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위원회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야 한다.

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당시 설치된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의제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운영세칙이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작성하여 2001년말까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